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351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교부송달(이사불명)의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1. 제목

-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2. 근거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4조(시정명령) 제1항 및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277호

3. 시정명령(처분) 대상 및 내역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대상	사건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2022영수6	(주)온새미로가	정*수	285011-0489133
	2023영수1			
	2023영수2			
	2023뮤수3	수키컴퍼니	변*희	110111-5871698
	2023뮤수4			
	2023뮤수5			
	2022영수5	(주)케이엠네모티브	양*진	160111-0477912
	2023영수8			
	2023만수3	(주)랩스	김*셉	110111-5058452
	2023예수14	(주)버뮤다프로젝트	제*원	110111-70680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온새미로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위반				
	수키컴퍼니						
	(주)케이엠네모티비						
	(주)랩스						
	(주)버뮤다프로젝트						
시정명령 내용	(주)온새미로가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스태프 보수 지급 - 신고인 김O곤에게 450만 원, 신고인 김O완에게 1,000만 원, 신고인 정O현 에게 100만 원 지급				
	수키컴퍼니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지급 - 신고인 정O순에게 4,600만 원, 신고인 김O라에게 2,750만 원, 신고인 현O니에게 2,800만 원				
	(주)케이엠네모티비		신고인들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지급 - 신고인 송O림에게 350만 원, 신고인 서O아에게 350만 원				
	(주)랩스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웹툰 제작 관련 용역대금 지급 - 신고인 김O현에게 250만 원 지급				
	(주)버뮤다프로젝트		신고인에게 미지급한 광고 출연료 지급 - 신고인 임O민에게 30만 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기간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4조(시정명령) 제1항 및 제4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술인 권리보호과	담당자	김기홍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776
		전자우편 주소	legalkkh@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4
	제출기한		2026년 9월 17일(목)까지				

< 기타사항 >

1.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38조 및 제41조제1항제2호).